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황종우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에 장례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비를 선지급하고, 어선원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통지 및 독촉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가능케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(법률 제21441호, 2026. 3. 10. 공포, 2026. 9. 11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비 선지급의 범위와 청구 유족 순위, 전자문서 통지·독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장례비 선지급 범위 및 사유 등(안 제23조의2)

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신청으로 승선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장례비를 선지급 할 수 있고, 이 경우 중앙회는 지체없이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함

나. 전자문서 고지 등(안 제49조의2 개정)

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 고지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통한 납부통지 및 독촉을 가능케하고, 납부기한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규정하여 어업인에게 충분한 납부기한을 부여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6. 00. ~ 2026. 07. 0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”를 “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험급여”로 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장례비의 선지급 범위 및 사유) ①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회는 지체없이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승선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.

제49조의2제1항 단서 중 “다만,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의무자가 동의하는”을 “다만,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 고지에 동의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0일”을 “20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직접”을 “직접, 전자문서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유족의 범위 및 순위) ① <u>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「선원법 시행령」 제29조를 준용한다.</u>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3조(유족의 범위 및 순위) ① <u>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험급여-----</u> ----- -----.
	② (현행과 같음) <u>제23조의2(장례비의 선지급 범위 및 사유) ①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회는 지체없이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승선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.</u>
제49조의2(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) ① <u>중앙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u>	제49조의2(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
다. 다만,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.

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2회 이상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독촉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.

다만,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 고지에 동의하는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20일 -----

-----.

③ ----- 직접, 전자문서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
연 락 처	(051) 773 - 5671